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73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강민국·조승환·박형수

정성국 · 김상훈 · 윤한홍

주호영 · 김형동 · 강명구

박성민 • 이종욱 • 윤재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5 및 100조의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100조의35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거주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00조의3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거주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100조의35제 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공제받는 금액은 202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202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 |
| | 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 |
| | 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 |
| | 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
| | 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7년 |
| | <u>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u> |
| | <u>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u> |
| |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
|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
| |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과세 |
| |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 |
| | 의 50을 한도로 한다.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에 |
| | <u>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 |
| |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증권 |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 |
| | 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 |
| | 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 |

<신 설>

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 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거 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 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 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100조 의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 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내역 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이하 이 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구 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거주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